2026 법무사 민사소송법 2차 핵심 암기장(제1판) 추록집

(2025년 8월 25일 발행)

2026 법무사 민사소송법 핵심 암기장(제1판) 추록집은 본문의 추가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소폭 개정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1페이지 아래서 4줄 ③ 내용 교체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이 청구기각(주 - 해당 판례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각하된 사안이었으나, 동 판례가 출제된다면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청구기각 사안으로 출제될 것이다)되더라도, 추심채권자가 기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32페이지 아래서 3줄 ① 내용 중간에 추가

① [**유형**] –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채권자(민법 제404조 - ※ 별도로 검토한다), **회사대표소송**의 주주(상법 제403조), **채권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민집법 제227조, 제229조, 제249조 - ※ 별도로 검토한다), 채권질의 질권자(민법 제353조), 공유자 전원을 위해 보존행위를 하는 공유자(민법 제265조)

36페이지 아래서 2줄 위에 ⑥ 추가

⑥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8페이지 위에서 13줄~15줄 삭제하고 ①②③ 내용 추가

①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주 – 소송법상 추심금소송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3자 소송담당에 해당하고, 이 점이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ⅱ)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

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iii) 또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iv)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결국 추심금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 중 법정소송담당**(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 근거 규정)으로서 **병행형**에 **해당**하고,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은 성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갈음형✗ / 주 – 추심금소송의 법적 성질을 갈음형으로 보아 지난 25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 판례로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수많은 판례와 이러한 법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판례들은 이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될 것이다).

39페이지 위에서 14줄 ③ 내용 끝에 추가

③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추심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다만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그 집행에 의한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여 추심권이 소멸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모두 **채무자에게 복귀**한다는 기존의 판례는 의미가 없게 되었다.

39페이지 위에서 18줄 (1) 내용 끝에 추가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계속 중 추심금소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주 –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이제는 오히려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0페이지 위에서 5줄 5. 내용 교체

5. 추심금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주 – 기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추심금소송의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채권

자대위소송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참고로 기존 판례의 원심입장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같이 보았던 것이다).

② 마찬가지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도 변경될 수 있다.

49페이지 아래서 9줄 2) 내용 끝에 추가

2) 중복제소 해당 여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의 소는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주 -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이제는 오히려 판결의 모순·저촉의 위험이 크므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68페이지 위에서 10줄 ④ 위에 [비교] 추가

※ [**비교**] - 판례는 ①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부존재)**」을 **전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같은 선이행을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장래이행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② 이와 달리 원고가 「**피담보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변제 등으로 소멸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잔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구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은 **장래이행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16페이지 아래서 5줄~117페이지 14줄까지 [비교] 교체

※ [**비교**] **(추심금소송과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 -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주 - 기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추심금소송의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앞서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참고로 기존 판례의 원심입장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같이 보았던 것이다). ② 마찬가지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도 변경될 수 있다.

120페이지 아래서 3줄 ② 내용 수정

② **제67조가 준용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예컨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등**의 경우에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129페이지 위에서 8줄 [비교] 교체

※ [**비교**] **(추심금소송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전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①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변경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주 – 기존 판례는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소송은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로서 같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근거 규정과 당사자적격의 요건이 달라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추심금소송의 기판력을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참고로 기존 판례의 원심입장도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과 같이 보았던 것이다). ② 마찬가지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기존의 판례도 변경될 수 있다.

154페이지 아래서 8줄 위에 [비교] 추가

※ [**비교**] **(제451조 제1항 제8호 사유에 해당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라 함은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 등이 그 후 다른 재판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이 확정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88페이지 위에서 10줄 4) 내용 교체

4)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참가의 문제

① 종래 판례에 따르면, 추심금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으로서 갈음형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서 참가하되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또한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상황이므로 추심채권자는 참가할 이유도 없었다.

②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변경하였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ⅰ)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ⅱ)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iii) 또한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응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시도하더라도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공탁함으로써 지급의무를 면할 수도 있다. iv)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소송경제에 반하고 추심채권자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결국 추심금소송은 **제3자 소송담당 중 법정소송담당**(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이 근거 규정)으로서 **병행형**에 **해당**하고,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채권자대위소송과 같은 성질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갈음형✗ / 주 - 추심금소송의 법적 성질을 갈음형으로 보아 지난 25년 동안 유지되었던 기존 판례로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한 수많은 판례와 이러한 법리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판례들은 이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될 것이다).